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88 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김용만·박상혁·민병덕

이인영 • 전현희 • 강준현

이정문 · 김승원 · 조승래

김남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.

그런데 다양한 청년정책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산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임.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특정 주제를 위탁하여 단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의 설계 및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. 청년정책연구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청년정책연구원의 설립준비) 별표 제25호 신설에 따른 청년정책연구원의 설립준비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